

공 고

2022년 2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03일

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



1. 선거명: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
2. 선거일: 2022. 02. 10.(목)
※ 후보자 소견발표 방법 및 시간, 투표시간은 추후 별도 공고
3. 선거장소: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1 (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84)
4. 선거인: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19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
5.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
 - 가. 자격 및 등록요건: 「대한요트협회 정관」 및 「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」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[별지 참조]
 - 나. 등록기간: 2022. 2. 04.(금) ~ 2. 05.(토) [2일간] 매일 09:00~18:00
 - 다. 등록장소: 대한요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(대한요트협회 사무처)



라. 구비서류

연번	서류명	비고
1	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	붙임1
2	이력서 1부	붙임2 또는 자유양식
3	주민등록초본 1부	
4	가족관계증명서 1부	
5	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	
7	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	붙임3
8	기탁금(2천만원)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	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(기탁금)
9	퇴임 증명서(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 한정) 1부	
10	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
* 기탁금 납입계좌
 하나은행 224-910080-95604 (예금주: (사)대한요트협회)

6. 선거운동

- 선거운동 기간: 2.06.(일)~2.09.(수), 선거일(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)
-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[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 참고]

제18조(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) 후보자가 선거공보, 선거벽보, 전화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,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

7.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

- 제출 기한: 2022. 2. 09.(수)까지
- 제출 방법: 대한요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(대한요트협회 사무처) 또는 이메일 제출 (보내실 곳: ksaf@sports.or.kr)

8. 선거인명부 열람기간

- 열람기간 : 2022. 2.05.(토) ~ 2. 07.(월) [3일간]
- 열람장소 및 방법 등: 추후 별도 공고

9. 기타사항

- 문의처 :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(전화: 02-420-4390)



[별지]

임원의 결격사유

□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6조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(3. ~ 7. 삭제)
8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9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10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

11. 국회의원

12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13.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
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□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(1~10. 생략)

11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

(이하 생략)



□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

제11조(후보자의 자격) ①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.

1.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2.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3.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4.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.

⑨ (생략)

